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춘남 의원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춘남 의원(1인)

찬 성 자: 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정도
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
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11인)

1. 제안이유

상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존 조례에 새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을 신설 규정하고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더 추가·보완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제5조)
- 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안 제6조)
- 다.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내용 추가(안 제13조)
- 라. 여성기업 확인 및 여성경제인명부 조항 삭제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 나. 부서검토: 기업지원과 의견제출(붙임)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여성기업 확인)”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

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미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를 “증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육성분야”를 “육성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야”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 창업 및 경영지원

5. 창업보육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입주 시 우대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여성경제인 간 협력 및 조직화
3. 여성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4. 비대면 방식 제품·유통·판매·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5. 여성기업 근로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중전의 제6조) 중 “의한여성기업”을 “의한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구미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제10조(중전의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 생산제품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제12조(중전의 제11조) 제4항제1호 중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개최 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유공자 포창)”을 “(유공자 표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여성기업”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공공기관”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p>
<p>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p> <p><신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p>

<신 설>

<신 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 디자인, 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미시 여성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 창업 및 경영지원
2. ----- 증진 지원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발굴 분야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조 (생략)

3. -----
----- 육성 지원

4. -----
----- 지원

5. 창업보육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입주 시 우대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여성경제인 간 협력 및 조직화

3. 여성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4. 비대면 방식 제품·유통·판매·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5. 여성기업 근로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생략)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 구매계획 대상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신설>

3. (생략)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제8조(자금지원 우대) -----

----- 의한 여성기업
업 ----- 법 제10조 -----

-----.

제9조(구매활동 촉진 등)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그 밖에 구미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0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생략)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신설>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

1. (현행과 같음)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 생산제품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삭제>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 6. (생략)

⑤ ~ ⑨ (생략)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생략)

<신설>

<신설>

제13조(유공자 포창) (생략)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 의원

2. ~ 6.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개최 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유공자 표창) (현행과 같음)

<삭제>

관계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기업지원과

조 례 명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자금지원 우대)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안 제6조)○ 여성기업 확인 및 여성경제인명부 조항 삭제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 공감○ 여성기업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인식 확산 효과 기대○ 여성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구미시의 방향과 일치○ 다만, 기존 조례 제4조제2항제3호는 관련 제도의 목적 달성 및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현행 조항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성·실효성 강화로 여성기업 육성▪ 경영역량 판로개척·지원 확대를 통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으로 여성친화도시 위상 확립○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조례를 통해 이미 보조하고 있는 사업의 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이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기업지원과 경제정책팀 장현호(☎480-6105)